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정관

- 2023년 2월 11일 개정 -

서울자유발도르프 학교 정관

[2013년 2월 23일 제정], [2014년 4월 20일 개정], [2016년 1월 23일], [2016년 12월 11일],
[2017년 2월 19일] [2018년 8월 25일 개정] [2019년 1월 5일 개정] [2019년 2월 16일]
[2020년 1월 18일 개정][2022년 2월 26일 개정][2023년 2월 11일 개정]

전 문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교육의 내용과 형태는 아동의 신체, 영혼, 정신적 소질과 능력에 기초하여 아동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아동들이 행동과 느낌, 사고에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전반에 걸쳐 노력합니다.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구성원은 권리와 의무에 평등하고, 정신에서 자유로우며 경제영역에 있어 형제애를 발휘하는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교는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라고 한다. 독일명은 ‘Seoul Freie Waldorfschule’로 한다.

제 2 조 (목적)

학교는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학교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① 학교의 설립과 운영
- ② 학교 자산의 소유 법인격인 “서울자유발도르프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 ③ 국내외 발도르프 학교, 발도르프 교육 단체와 연대 사업
- ④ 지역사회에서의 교육과 관련한 사업
- ⑤ 발도르프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및 출판 사업
- ⑥ 대안교육단체와 연대사업
- ⑦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제 4 조 (소재지)

학교는 경기도 부천시 옥길로 56번길 97(옥길동)에 소재한다.

제 2 장 외원

제 5 조 (구성)

1. 학교의 구성원(이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① 정회원 : 전임교사, 학부모, 전문 행정가
 - ② 특별회원 :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 의장단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거친 자
 - ③ 준회원 : 휴학한 학부모, 휴직 전임교사, 비전임교사, 행정직원
 - ④ 후원회원 : 학교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정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자

제 6 조 (교직원)

1. 교직원이라 함은 교사와 직원 그리고 전문 행정가를 말한다.
2. 제5조 제1항 제1호의 전임교사는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학교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3. 교직원 선발은 인사위원회에 위임하며, 의장단에 보고한다.

제 7 조 (학부모)

1. 제5조 제1항 제1호의 학부모는 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자를 말한다.
2. 신입학이 예정된 학부모는 입학식 후 정회원으로 한다.
3. 편입학이 확정된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등교한 후 정회원으로 한다.

제 8 조 (외원의 권리)

1.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총회에 부의된 안건을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2. 준회원은 총회의 참관은 할 수 있으나, 의견 개진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3. 특별회원은 정관과 규약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외원의 의무)

1.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총회와 각급 회의, 위원회 또는 실무팀에 참여할 의무
 - ② 본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교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교 교육과 교육행정에 성실할 의무
3. 학부모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의무
 - ② 학교에 정해진 입학금, 발전기금 및 교육비 납부 의무
 - ③ 학부모 교육에 참여할 의무
 - ④ 서울자유발도르프 협동조합 가입 및 기본출자금, 건축출자금 납부 의무

제 10 조 (외원의 역할)

1. 교사는 교육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의장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을 지원하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의장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1 조 (탈퇴)

1. 학부모의 경우 해당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원은 당연 탈퇴한다.
 - ① 졸업한 경우
 - ② 전학, 자퇴, 입학 취소 등 학칙에 의해 제적된 경우
 - ③ 사망한 경우
2. 학부모 회원은 위의 제 11조 1항 2호에 해당할 때 다음의 각호에 따라 탈퇴한다.
 - ① 탈퇴를 원하는 학부모 회원은 탈퇴의사를 기재한 탈퇴신청서를 서면으로 탈퇴를 원하는 날 (이하 “탈퇴요청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탈퇴의 효력은 제2항의 탈퇴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단에서 정한 일시에 발생한다. 이 기간 내에 의장단 결의가 없을 경우 탈퇴의 효력은 탈퇴요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3. 교직원이 사직한 경우
4. 타당한 사유 없이 학부모 회원이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의무를 장기간 위반할 경우, 의장단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제 12 조 (재가입)

1. 학부모 회원이 휴학의 사유가 해소되어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의장단 보고를 거쳐 재가입한다.
2. 탈퇴한 이전 학부모회원은 해당 학생의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 의장단 승인을 거쳐 재가입한다.
3. 재가입에 따른 발전기금 및 입학금은 면제한다.
4. 학생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제 13 조 (제명)

1. 회원이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로 당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제명된 학부모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발전기금, 입학금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회원이 제명된 경우 재가입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조직과 운영

제1절 총회

제 14 조 (총회구성)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의 소집은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장단이 이를 결정한다.
2. 의장단은 매년 2월 말 이전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4. 의장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의장단은 총회 기일 10일 전에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시총회의 소집청구)

1. 회원정수의 1/5 이상 회원, 참석자 2/3 이상의 상정 동의를 얻은 의안이 있는 학교회의, 감사는 의장단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청구가 있을 후 의장단은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학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의 채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의장단, 인사위원 1인의 선출과 해임 및 감사, 재정위원장, 시설위원장의 인준
 - ④ 입학금, 발전기금, 교육비의 변동에 관한 사항
 - ⑤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⑥ 학교의 해산 및 조직전환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의장단, 학교회의의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된 사항 또는 회원 정수의 1/5이상의 회원에 의하여 상정된 사항
2. 인사위원회의 인사 규정 변경은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 18 조 (총회의 운영)

1.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총회의 결의는 최대한 회원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 의결권의 위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위임한 회원의 의결권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②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피위임자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 ③ 피위임자는 정회원이어야 하며 1인 위임받을 수 있고,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정회원,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총회에서 회원 자신의 선임, 해임, 제명 등 회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개인에 대한 금전 사항이 학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2 절 의장단

제 19 조 (의장단 구성)

의장단은 다음 각 호의 의장으로 구성한다.

- ① 학부모 의장 3인
- ② 교사 의장 3인

제 20 조 (의장단의 권한)

의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한다.

- ①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예산의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
- ④ 재정위원장, 시설위원장 추천 및 재정위원 임면
- ⑤ 학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실무팀의 구성 및 승인
- ⑥ 예산 및 사업계획의 수립
- ⑦ 기타 총회 및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 ⑧ 의장단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의장단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21 조 (의장단 회의의 개회 및 의결)

1. 의장단 회의는 의장단 5인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의장단 회의 결의는 의장단 전원 만장일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 22 조 (의장단 회의의 소집)

의장단 회의는 각 의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 (의장단 선출)

1. 학부모 의장 3인은 총회에서 학부모 정회원 2/3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교사 의장 3인은 교사회에서 선출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24 조 (의장단의 직무)

각 의장은 의장단 회의에 출석하여 학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25 조 (의장의 임기)

1.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임 및 중임할 수 없다.

제 3 절 학교 회의

제 26 조 (학교회의의 목적)

1. 학교회의는 인지, 감지 기구로서 모든 구성원들이 의장단을 비롯하여 모든 조직 단위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2. 의결기구 및 집행 단위가 학교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 27 조 (학교회의의 구성)

학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① 각 학년별 학부모 대표 및 방과후 학부모 대표
- ② 상급학생회 임원 중 10학년 이상의 학생회 임원
- ③ 의장단 중 학부모 1인, 교사 1인 이상
- ④ 재정위원장, 시설위원장
- ⑤ 신뢰의 팀 중 학부모 1인, 교사 1인 이상
- ⑥ 감사 1인 이상
- ⑦ 행정실 1인 이상
- ⑧ 보고/논의 안건이 있는 교사 및 실무팀장
- ⑨ 참석하고자 하는 정회원

제 28 조 (학교회의의 운영)

1. 학교회의는 월 1회 개회가 원칙이며, 학교 전체의 직접 소통을 위해 다음 각 호가 보고되어야 한다.
 - ① 의장단 활동 상황 및 의결 사항
 - ② 학교의 재정 현황
 - ③ 학교의 주요 진행 사항 및 공유가 필요한 사항
 - ④ 기타 학교 전체 구성원의 공유 혹은 도움이 필요한 행사 일정
2.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학교회의 준비팀을 둘 수 있다.

3. 학교 회의의 상세 운영 방식은 학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4 절 교사외

제 29 조 (교사외의 구성)

교사회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제 30 조 (교사외의 역할)

1. 교사회는 교육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한다.
2. 교사회는 교육 부분에서 학교를 대표한다.

제 5 절 초빙위원외

제 31 조 (초빙위원외의 구성)

초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① 학부모 2인
- ② 교사 2인

제 32 조 (초빙위원외의 선출)

1. 학부모 위원은 각 학년에서 후보 1인을 선출 후, 전체 학년 후보가 모여 호선을 통해 최종 2인을 선출한다.
2. 교사 위원은 선출된 학부모 위원 2인이 지명한다.

제 33 조 (초빙위원외의 직무)

초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① 의장단 후보 탐색
- ② 의장단 후보 등록 및 선출을 위한 관리
- ③ 의장단의 요청시 재정위원장, 시설위원장, 실무팀장에 대한 후보 탐색
- ④ 기타 초빙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사항

제 34 조 (초빙위원외의 임기)

초빙위원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제 6절 감사

제 35 조 (감사의 구성)

학교에 학부모 정회원 중 2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 36조 (감사의 선출)

학부모 정회원 중에서 자원 및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 3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하며,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① 감사 규정에 따른 제반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② 감사결과 규정에 위배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의장단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③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38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제 7 절 인사위원회

제 39 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① 교사 3인
- ② 학부모 의장 1인
- ③ 재정위원장
- ④ 학부모 1인

제 40조 (인사위원의 선출)

- ① 교사 3인은 교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학부모 의장 1인과 재정위원장은 당연직이며 학부모 1인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41 조 (인사위원회의 직무)

인사위원회는 교사와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고, 인사 처리의 적정을 기함에 목적이 있으며 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 42 조 (인사위원회의 임기)

인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제 8 절 신뢰의 팀

제 43 조 (신뢰의 팀 구성)

신뢰의 팀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① 학부모 2인
- ② 교사 2인

제 44 조 (신뢰의 팀 선출)

1. 학부모 신뢰의 팀원은 2/3 이상 참석한 각 학년 모임에서 2/3 이상 득표한 후보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2. 교사 신뢰의 팀원은 학부모 신뢰의 팀원이 지명한다.

제 45 조 (신뢰의 팀 직무)

1. 신뢰의 팀은 학교 모든 구성원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되 운영절차는 신뢰의 팀 규정에 따른다.
2. 신뢰의 팀원은 원활한 직무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신뢰의 팀의 의결 사항은 의장단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추인을 받는다.

제 46 조 (신뢰의 팀 임기)

신뢰의 팀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운영

제 47 조 (회계 연도)

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8 조 (수입)

1. 학교의 재정은 입학금, 교육비, 발전기금,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제 49 조 (입학금)

1.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킬 경우 입학금 및 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 50 조 (발전기금)

1. 학부모는 자녀 1인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800만 원 이상,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상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네 번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납입을 면제하며, 9학년 이상의 상급과정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2. 약정된 발전기금은 회원의 가입과 동시에 전액을 학교에 납부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단의 승인을 통하여 발전기금을 분할 납부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그 절차는 재정 운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3. 학교는 회원의 발전기금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납입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4. 납부된 발전기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전기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 51 조 (예산 및 결산)

학교의 예산과 결산은 의장단에서 작성하고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6 장 보칙

제 52 조 (정관의 개정)

정관 개정의 발의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동의나 의장단의 결의로 성립한다.

제 53 조 (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내용이 학교 규칙과 규정에 배치되는 경우 정관을 우선하여 해석하고, 관련조항은 개정하여야 한다.

제 54 조 (규정)

1. 학교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교사의 인사와 급여에 관한 규정 등 기타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2. 규칙,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는 의장단에서 결정한다.

제 55 조 (예산)

1. 학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2. 해산은 학교가 파산하였을 때, 기타 학교의 해산 사유가 생겼을 때 해산한다.
3. 해산하였을 때에는 의장단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 즉시 학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해산하였을 때에는 학교가 진 채무는 학부모 회원이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고, 잉여금은 교직원의 급여규정에 명시된 급여 및 금전을 포함하여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있는 유사 관련 단체에 기부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이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① 이사회 운영규정
- ② 인사 규정 (초빙, 교직원 임면 등)
- ③ 급여 규정 (교직원 급여 등)
- ④ 입학 관리 규정
- ⑤ 재정 운용에 관한 규정 (발전기금, 입학금 등의 운용 규정)
- ⑥ 감사에 관한 규정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0일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23일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11일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19일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25일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이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 이사회는 다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① 신뢰의 팀 운영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16일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월 18일 임시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이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 의장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① 의장단 운영규정
- ② 실무팀 운영규정
- ③ 초빙위원회 운영규정
- ④ 학교회의 운영규정
- ⑤ 총회 운영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2월 11일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0조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2022년 9월 1일 이후 신입입생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